

붙임

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자 및 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

- 대상: 재산세 과세기준일(2020. 6. 1.) 현재 건물소유자가 3개월 연속, 10%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
- 세목: 7월 납기 재산세 건축물분 재산세(區稅)
- 감면조건 및 감면 금액
 - 1) 감면조건 = 임대기간 3개월 이상, 임대료 10% 이상 인하 시 적용 (2020. 6. 1. 기준 약정 포함)
 - 2) 감면금액 = 해당 임대면적의 재산세 산출세액 × 임대료 인하율(10~50%까지)
 - 3) 감면한도 = 재산세 감면세액 최대 100만 원까지
- 신청방법 : 대상자는 임대계약서, 입금증 등을 소지하고 신청
- 신청기관 :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부서
- 신청기간 : 2020. 6. 1. ~
- 문의 : 동구 062-608-2982, 서구 062-360-7927, 남구 062-607-3121
북구 062-410-8141, 광산구 062-960-8124